

18.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사건

<헌재 2005. 2. 3. 2004헌가8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판례집 17-1, 51>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들이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란 내지 폭력성이 있는 외국의 비디오물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유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게 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은 외국비디오물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음란·폭력성이 있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면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 형사벌이 부과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

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표현물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심사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사전심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송인준 재판관은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 선고 후 2006. 10. 26 선고된 2005헌가14 결정(판례집 18-2 379)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음반을 국내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음반 제작 전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논거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및 외국음반에 관한 국내수입 및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폐지되었다.

한편 2007. 10. 4. 선고된 2004헌바36 결정(공보 132, 1023)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대하여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그 자체의 당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